

2021년도 장애인식개선 영화사업 지원 사업요강

1. 사업목적

- 장애 인식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영화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영화향유권 및 관람환경 개선 추구

2. 사업개요

- (1) 사업명 : 장애인식개선 영화사업 지원
- (2) 사업기간 : 2021년 10월 ~ 12월
- (3) 사업내용 : 미디어센터 등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영화 관련 장애인식 개선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
- (4) 지원방법 : 공모를 통한 지원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
- (5) 지원예산 : 총 60백만원 (1개 사업당 10백만원 내외)

3. 지원내용 및 조건

(1)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
□ 신청자격

- 일반 시민 또는 장애인 대상으로 3년 이상 영화교육 및 영화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- 위원회의 '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사업' 등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□ 지원대상

-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우리 사회에 장애 감수성과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영화 관련 사업
-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및 관람환경 증진 등을 위한 영화 관련 사업

<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예시>

-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·직업 캠프(견학)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
- 장애인 영화영상제작 프로그램
- 기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강화 교육프로그램(비대면 포함) 등

- 장애인 대상 단순 영화관람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영화진흥위원회는 (사)농아인협회에 '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사업'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(사)농아인협회가 지역협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상영회를 활용하여 장애인 참가 영화관람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단순 영화관람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(2) 사업 진행

□ 사업기간 :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

(보조금은 연내 집행 완료되어야 하며, 회계연도 이월 불가)

□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

-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과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 결정을 취소함
- 보조금은 약정 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. 단, 보조금 교부 후 환수사유 발생시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 조치가 있음
-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
-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
□ 사업진행 상황의 보고

- 지원결정사업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초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위원회는 사업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문제가 발생할 시 감사권을 행사(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)할 수 있음

(3) 집행·정산

□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·정산

-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·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-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- 본 보조금은 보조금 지출 세목 명으로만 집행 가능함

-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,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·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(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)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
- 보조사업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, 약정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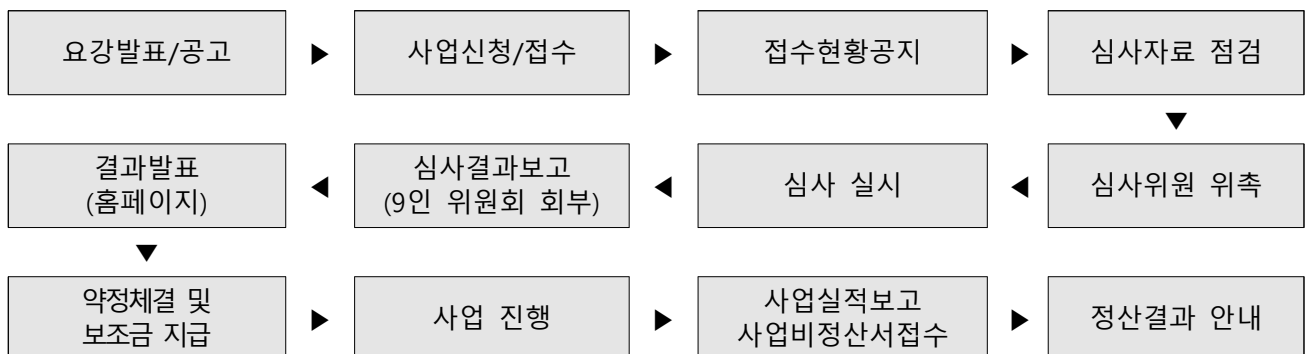
□ 보조금 집행 한도

- 기자재(카메라 등)구입 및 수리비, 경상비(통신비,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), 단체 운영 목적의 상시인건비 등은 집행 불가
- 시민영상제작지원의 작품제작비는 한 작품당 200만원 초과 집행 불가
- 운영경비(운영위원회 회의운영비 등의 공통 운영비)는 보조금액의 7%이내 집행

□ 보조사업 정보공시

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

4. 지원절차



5. 선정절차

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□ 심사 및 최종선정

-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
-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

□ 선정기준

- 사업 수행능력 : 사업 추진단체의 동종사업 수행경력, 참여인력의 적정성
- 사업계획의 적합성 :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, 추진체계 및 사업운영의 현실성, 사업예산의 적정성
- 추진사업의 효과성 : 장애인식 개선 효과 등

6.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
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단체
- 국고,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사업일 경우 신청 불가하나, 지자체(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)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 가능
- 신청일 현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8에 의거,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지자체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동법 제3조의 4(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)를 위반한 경우
-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신청자
-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
-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
- 다음의 각종 사업 및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 - 단체의 신규설립 및 시설의 건립,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
 - 보조금을 통한 적립, 용자사업
 - 기업(후원, 협찬 등)의 영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
 -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

7.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(1) 접수기간

□ 접수기간 : 2021년 7월 30일(금) ~ 8월 30일(월) 18:00

※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

(2) 신청방법

□ 온라인 접수 : 홈페이지 www.kofic.or.kr - 진흥사업안내 - 세부진흥사업 - 신청

※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수 창 자동 종료

□ 제출서류 목록 (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, 다운로드 후 작성)

※ 사업신청서 서류는 순서대로 1개의 PDF로 묶어서 제출

1. 사업신청서

2. 별첨 서류

(별첨1) 신청단체 소개서 및 사업실적 1부

* 설립근거 증빙서류 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정관) 1부 포함

(별첨2) 사업계획서 (주요 참여인력 경력세부내역서 포함) 1부

(별첨3) 예산집행 계획서 1부

(별첨4) 성범죄·성희롱 예방 서약서 1부

8.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

(1)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

□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,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처분 위반, 약정서상의 의무사항 불이행,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
-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실적보고서(중간보고서 포함) 제출,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
-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
- 보조사업자의 휴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등

(2)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

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에 의거,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,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.
 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
 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(보조금의 최대 5배)
 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

9. 기타 의무사항

□ 수행명령

- 보조사업자는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, 동법 시행령, 문체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 위원회 「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」,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

□ 사후관리

-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 -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)하려는 경우
 -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
 -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

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

- 위원회는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(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)할 수 있음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(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) “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” 지원 단체(대상자)의 휴폐업, 국세 및 지방세체납,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(대상자)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,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함

□ 지원대상자의 성범죄 예방 의무

-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(사무국장급 이상의 법인의 주요 구성원 또는 제작자, 감독,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)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'성범죄 사실확인서'를 약정 체결 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
□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

- 보조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, 학습권,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,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

- 보조사업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,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.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,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

□ 정보공시

-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

□ 수행평가

- 위원회 진흥사업 수행평가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3년 연속 동일사업자가 지

원받는 경우 수행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

10. 기타사항

- 동 사업은 2021년에 한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 존치시 2022년부터 위원회 '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지원 사업'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

12. 문의처

(48058)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 영화 문화팀 <장애인식개선 영화사업 지원> 담당자 정지원 (051-720-4806)

※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